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강경숙・김준형・차규근

조 국・황운하・신장식

김 윤・박은정・진선미

김재원 · 김문수 · 이해민

서왕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 중 "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"를 "하향 조정하거나 특수교 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	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
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	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	②
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	
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	
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	
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	
학급 설치 기준을 <u>하향 조정할</u>	<u>하향 조정하</u>
<u>수 있으며</u> , 순회교육의 경우 장	거나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
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	<u>배치할 수 있으며</u>
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	
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